서울송파우체국공고 제2018-8호

2018년 제2회 서울송파우체국 우정사업보조인력(상시계약집배원) 선발
최종합격자 명단 및 유의사항 등 공고

2018년도 제2회 서울송파우체국 시행 우정사업보조인력(상시계약집배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채용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서울송파우체국장

1. 최종합격자 명단

□ 상시계약집배원(1명)

구분	응시번호	성명	비고
상시계약집배원	서울송파_상시_01	***	

2. 채용(계약) 시기

□ 채용일정은 개별통보 됩니다.

□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서울송파우체국 지원과로 통보 바랍니다.
(인사담당 : 02-405-8707)

3. 우체국 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준비서류

제출하여야 할 채용관계서류

가. 주민등록 초본 1통(병역사항 기재)

나. 주민등록 등본 1통

다. 운전면허증 사본 1통

라.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서울가정법원 발급)

마.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바. 채용신체검사서 1통(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

사.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가입보험금 2,000만원)

아. 우체국 통장사본 1통

자. 사진 1매(3㎝ × 4㎝)

■ 채용신체검사 규정[별지서식]

(앞쪽)

채용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구 분	②시험실기기관	③응 시 직	④응시번호	⑤ 성 명 (한 자)	( )	사 진 (3㎝×4㎝) ※ 압인 또는 계인
⑥검 사 시						
⑦재 사 용				⑧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흉 위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 ) 우 :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 우 : ( )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흡기질환		
간 질 환			신경질환		
소화기질환			피부질환		
순환기질환			정신질환		
비뇨기질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

검 사 결 과 합 격 여 부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보류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210㎜×297㎜(보존용지 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②란에는 시험실시기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서울지방우정청)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상시계약집배원 또는 우체국택배원)
   다. ⑦란에는 신체검사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으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채용신체검사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 또는 계인(契印)을 하여야 합니다.
2.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입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없음 등
3.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4.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 검사가능한 의료기관 】

○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지정병원은 어느 곳이든 가능합니다.
   * 예)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원, 보건소 등
   *** 단, "○○○○협회" 등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시에는 의료법상 병원·의원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